

『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
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2년 12월 14일

나. 발 의 자 : 박주연, 임춘구, 권기만, 김성현, 강승수, 박세진,
손홍섭, 윤영철, 정하영, 허 복, 황경환, 김재상,
이명희, 김상조, 김수민, 김정곤, 김정미, 김춘남,
김태근, 박교상, 윤종호, 이수태(22명)

다. 회부일자 : 2012년 12월 14일

라. 상정일자 : 2012년 12월 18일

제17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박주연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」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
2012.10.29. 『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』에서 심의·의결한 2013년도
구미시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의원의
직무활동에 대해 매월 지급되는 월정수당 금액을 조정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 “1,858,000원”을 “1,970,000원”으로 조정(안 제3조)

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남 동 수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구미시의회 의원의 의정비를 지급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되는 월정수당 금액을 조정하고자 함.

○ 주요내용

-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되는 월정수당 “1,858,000원”을 “1,970,000원”으로 조정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에 의거 『구미시의정비 심의위원회』로부터 2013년도 구미시의회 의원 의정비를 월정수당 연2,365만원과 의정활동비 연1,320만원을 합한 연3,685만원으로 결정 통보해옴에 따라
- 의정활동비는 조정이 없으며,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월별 균분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타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